

학교법인 단호학원 정관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단호학원(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용인대학교를 설치 경영한다.

제4조(주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용인대학로 134에 둔다(2006. 01. 24., 2015. 4. 30. 개정).

제5조(정관의 변경)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의 결을 거쳐 관할청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갖추어 14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012. 8. 22., 2014. 4. 30. 개정).

제 2 장 자산과 회계

제 1 절 자산

제6조(자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 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별지목록의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③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7조(재산의 관리) ①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규정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8조(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 및 수익사업의 수입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2 절 회계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대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 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대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총장이 집행하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사장이 집행한다.

제10조[예산외의 채무부담] 이 법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회계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회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12조[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년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2조의2[예·결산보고 및 공시] 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2006. 11. 15. 신설).

제 3 절 예산·결산 자문위원회 (2006. 11. 15. 삭제)

제13조[예산·결산자문위원회의 설치] (2006. 11. 15. 삭제)

제14조[위원회의 조직] (2006. 11. 15. 삭제)

제15조[위원장 선출 및 직무] (2006. 11. 15. 삭제)

제16조[회의] (2006. 11. 15. 삭제)

제17조[위원회의 간사 등] (2006. 11. 15. 삭제)

제 3 장 기관

제 1 절 임원

제1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2008. 10. 30., 2024. 02. 02. 개정).

1. 이사 8인(이사장 1인 포함)
2. 감사 2인
3. 법인에 상근하는 임원은 1명(이사)을 둘 수 있다.
4. 상근임원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2006. 11. 15. 개정).

1. 이사 4년(2024. 10. 01. 개정)
2. 감사 3년. 단, 1회에 한하여 중임 가능(2006. 11. 15. 삭제, 2012. 02. 27. 신설)

제20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등 인적사항을 학교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2006. 11. 15. 개정).

②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2006. 01. 24., 2006. 11. 15. 개정).

③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상근임원을 둘 수 있다(2008. 10. 13. 신설)

제20조의2[개방이사의 자격] 이 법인의 개방이사는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방이사가 될 수 없다(2006. 11. 15. 신설, 2021. 02. 08. 개정).

1. 해당 학교법인의 설립자(2021. 02. 08. 신설)
2. 해당 학교법인의 설립자와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2021. 02. 08. 신설)
3. 해당 학교법인의 임원(개방이사는 제외한다)이었던 사람(2021. 02. 08. 신설)
4.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이었던 사람(2021. 02. 08. 신설)

제20조의3[개방이사의 정수] 이 법인의 개방이사의 수는 2명으로 한다(2006. 11. 15. 신설).

제20조의4[개방이사의 선임] ① 법인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재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3월전)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 개방이사 선임대상자를 추천 요청하여야 한다. (2006. 11. 15. 신설, 2008. 10. 13. 개정).

② 법인은 개방이사 선임 대상을 추천 요청할 때 제20조의 2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함께 제시 할 수 있다(2006. 11. 15. 신설).

③ 법인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2006. 11. 15. 신설, 2008. 10. 13. 개정).

④ (2008. 10. 13. 삭제)

제20조의5[추천위원회의 구성] ① 추천위원회는 용인대학교 대학평의원회에 둔다(2008. 10. 13. 신설).

② 추천위원회 위원 정수는 5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2008. 10. 13. 신설).

1. 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2인
2.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

③ 추천위원회의 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2008. 10. 13. 신설).

④ 추천위원회 위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추천위원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2008. 10. 13. 신설).

⑤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위원 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08. 10. 13. 신설).

⑥ 추천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일 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08. 10. 13. 신설).

⑦ 그 밖의 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천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2008. 10. 13. 신설).

제21조[임원선임의 제한] ① 이사 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액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출연한 경우에는 이 사정수의 3분의 2 미만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 할 수 있다(2006. 11. 15. 개정).

②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 사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2006. 11. 15. 개정).

제1편 학교법인

③ 이사 정수 3분의 1 이상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경험 또는 합산한 교육경험이 3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2006. 11. 15. 2021. 02. 08. 개정).

1.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험(2021. 02. 08. 신설)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험(2021. 02. 08. 신설)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 또는 동법 제17조제1항의 명예교수·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으로 근무한 경험(2021. 02. 08. 신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근무경험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경험(2021. 02. 08. 신설)

④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2006. 11. 15. 개정).

⑤ 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인사를 선임한다(2006. 11. 15. 신설, 2008. 10. 13. 개정).

⑥ 제5항의 감사 추천 등에 대하여는 제20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2006. 11. 15. 신설).

⑦ 감사 중 1인은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여야 한다.

⑧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2006. 11. 15. 신설).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자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자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자

제22조(이사장의 선출 방법과 그 임기 등)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취임한다(2006. 01. 24. 개정).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이사장은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대학교의 총장을 겸하지 못한다.

제23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4조(이사장 직무 대행자 지정)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 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5조(감사의 직무) (2006. 11. 15. 삭제)

제26조(임원의 겸직 금지) ① 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 및 다른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이나 다른 학교법인의 이사장을 겸할 수 없다(2006. 11. 15. 신설).

② 이사는 감사 또는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③ 감사는 이사장, 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제 2 절 이사회

제27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2016. 12. 05. 개정).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28조(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2006. 11. 15. 개정).

② 이사회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06. 11. 15. 개정).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9조(이사회의 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임원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30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 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0조의2(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이사회는 회의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1년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이사회에서 시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2006. 11. 15. 신설, 2021. 02. 08. 개정).

제31조(이사회 소집 특례) ①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 소집 통지를 하여야 한다(2006. 11. 15. 개정).

1. 재적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2006. 11. 15. 삭제)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회의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찬동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2006. 11. 15. 개정).

제 3 절 대학평의원회

제31조의2[대학평의원회의 설치] 대학에서는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 (이하 “평의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2006. 11. 15. 신설).

제31조의3[평의원회의 구성] ① 평의원회는 교원·직원·조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11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2006. 11. 15. 신설, 2021. 02. 08. 개정).

1. 교원 4명
2. 직원 3명
3. 조교 1명(2021. 02. 08. 신설)
4. 학생 1명
5.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2명
6. (2022. 12. 28. 삭제)

② 평의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1항의 각 단위 중 어느 한 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2006. 11. 15. 신설).

제31조의4[교내 평의원회 위촉] ① 각 구성단위에 구성원이 모두 참여하는 하나의 단체가 있는 경우 각 구성단위의 평의원은 각 단위의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를 위촉하되, 구성원이 모두 참여하는 단체가 없는 경우 각 단위의 전체 구성원이 참여하여 추천하는 자를 위촉한다(2006. 11. 15. 신설).

제31조의5[평의원회 의장 등] ① 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2006. 11. 15. 신설).
②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2006. 11. 15. 신설).
③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여,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2006. 11. 15. 신설).

제31조의6[평의원의 임기]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학생대표는 1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와 같은 2년으로 한다(2006. 11. 15. 신설).

제31조의7[평의원회의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자문에 한한다(2006. 11. 15. 신설, 2008. 10. 13., 2021. 02. 08. 개정).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현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추천위원회의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2021. 02. 08. 개정)

제31조의8[운영규정] 평의원회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2006. 11. 15. 신설).

제 4 장 수익사업

제32조[수익사업의 종류]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 경영하는 대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2008. 10. 13. 개정).

1. 부동산 임대업 및 매매업

제33조[수익사업의 명칭] 제32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수익사업을 경영한다(2019. 12. 11. 개정).

1. 단호빌딩(분당)

제34조[수익사업체의 주소] 제33조의 사업장의 주소는 다음 각호와 같다(2015. 4. 30., 2019. 12. 11. 개정).

1. (2019. 12. 11. 삭제)

2. 단호빌딩(분당소재)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32

제35조[관리인] ① 제33조에 규정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임용, 복무, 보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 5 장 해산

제36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014. 4. 30. 개정)

제37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 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청에 대한 청산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다른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 귀속된다. (2014. 4. 30. 개정)

제38조[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할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하되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14. 4. 30. 개정)

제 6 장 교직원

제 1 절 교원

제 1 판 임명

제39조(임용) ①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다만, 대학교육기관의 장에 대하여 그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2006. 11. 15., 2016. 12. 05. 개정).
② 교원의 정년은 65세로 하되, 총장의 정년은 예외로 한다(2006. 06. 14. 신설).
③ 학교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2006. 11. 15. 신설, 2024. 10. 01. 개정).
④ 제1항 이외의 대학교의 교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강사, 조교는 제외한다) 하되 임용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범위내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한다(2014. 4. 30., 2012. 7. 20., 2016. 12. 05., 2019. 12. 30. 개정).

1. 근무기간

가. 교수 : 정년까지의 기간.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나. 부교수, 조교수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2012. 7. 20. 일부삭제).

2. 급여

보수 및 수당 등에 대하여는 따로 정한다.

3. 근무조건

책임시수, 근무지, 소속기관, 업무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4. 업무 및 성과약정

근무기간 중 교육 및 연구 등의 수행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근무기간 종료 후 재계약임용을 위한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 제2항의 정년까지 임용할 교원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정년까지 임용할 교원을 심사하기 위하여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당해 대학교가 정하는 정년보장교원심사기준에 따라 해당 교원의 연구실적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3.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정한다.

4. 정년까지 임용되는 교원의 정수는 대학교의 교원정원의 범위내에서 대학의 총장이 정한다.

⑥ 대학교의 부총장, 특임부총장, 대학원장 및 처·실장, 학장 등의 보직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보한다(2025. 02. 05. 개정).

⑦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의 임용권자가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2016. 12. 05. 개정).

⑧ 제2항의 계약조건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근무기간을 제외한 계약조건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⑨ 강사, 조교 : 근무기간을 1년으로 하되 총장이 임용한다. 기타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2016. 12. 05., 2019. 12. 30. 개정).

⑩ 교원의 임용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정관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교원인사규정으로 정한다(2010. 01. 22. 신설, 2016. 12. 05. 개정).

⑪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전보, 겸임, 파견,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2016. 12. 05. 신설).

제 2 관 신분보장

제40조(휴직의 사유) ① 교원이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2011. 3. 31., 2016. 12. 05., 2024. 02. 02. 개정).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 유학을 하게 된 때,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
6.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에게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한 외국에 설립된 한국학교, 한글학교, 한국교육원 등의 교육기관) 또는 민간단체(비영리법인 또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등 영리법인으로 국내소재법인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협회 등으로 국내소재 기관)에 임시로 고용된 때
7. 만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7의2. 만 19세미만의 아동 청소년(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하는 경우
8. 관할청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10.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11.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1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에 따라 계산한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 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경우

1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고, 같은 항 제4호의2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2024. 02. 02. 신설).

③ 임용권자는 제1항 제7호 및 제7호의2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같은 호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며, 그 밖에 같은 호에 따른 휴직자의 신분 및 처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4. 02. 02. 신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휴직기간과 휴직자의 신분 및 처우 등에 관하여는 정관(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그가 정하는 교원의 신분보장 및 징계에 관한 규칙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정한다(2024. 02. 02. 개정).

제41조(휴직의 기간) ①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2011. 3. 31., 2014. 4. 30., 2016. 12. 05., 2021. 02. 08., 2025. 3. 28. 개정).

1. 제4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제40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거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40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로 한다.

4. 제40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5. 제40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제40조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자녀 1인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다.

6의2. 제40조 제7호의 2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인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

7. 제40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8. 제40조 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2011. 3. 31. 신설).

9. 제40조 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2011. 3. 31. 신설).

10. 제40조 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전임기간으로 한다(2011. 3. 31. 신설).

② 제1항의 휴직기간은 임용기간 중의 남은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제40조 제1항 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휴직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025. 3. 28. 신설)

제42조(휴직교원의 신분) ① 휴직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

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2016. 12. 05. 개정).

③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은 제40조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한다.

제43조(휴직교원의 처우) ① 제4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7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의 80퍼센트를 지급하며,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또한 제40조 제5호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50퍼센트를 지급한다(2011. 03. 31. 개정).

② 제40조 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제8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2011. 3. 31., 2021. 02. 08. 개정).

③ 제40조 제7호 및 제7호의 2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호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며, 그 밖의 같은 호에 따른 휴직자의 신분 및 처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률에 따른다(2021. 02. 08. 신설).

제44조(면직의 사유)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2005. 8. 23., 2016. 12. 30. 개정).

1.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3.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

②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2016. 12. 30. 개정).

③ ~ ⑧ (2016. 12. 30. 삭제)

제44조의2(직위의 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2016. 12. 30. 신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 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2016. 12. 30.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자가 직위 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2016.

12. 30. 신설).

④ 임용권자는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2016. 12. 30., 2017. 4. 01. 개정).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2016. 12. 30. 신설).

⑥ 제1항 제1호와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2016. 12. 30., 2017. 4. 01. 개정).

제45조(보수 등) 교원의 보수 및 퇴직관련 급여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2013. 02. 08. 개정).

제46조(의사에 반한 휴직, 면직 등의 금지) ①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 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 교원은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46조의2(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제46조의3(의원면직의 제한) (2020. 02. 28. 삭제)

제46조의4(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의 징계사유 확인 등) ①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2020. 02. 28. 신설).

1. 교직원 징계규정 제2조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

2. 제4항에 따른 의원면직에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확인 결과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파면·해임·강등·정직에 준하는 정도의 징계(이하 "중징계"라 한다)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교원징계위원회 규정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정관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해당 교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2020. 02. 28. 신설).

③ 교원징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2020. 02. 28. 신설).

④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그 비위 정도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020. 02. 28. 신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관할청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

제 3 절 교원인사위원회

제47조(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교원(학교의장을 제외한다)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2006. 11. 15., 2016. 12. 05. 개정).

제48조(인사위원회의 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2006. 11. 15., 2016. 12. 05. 개정).

1.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2. 교원의 보직에 관한 사항
3. 교원의 연수대생자 및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4.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교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9조(인사위원회의 조직) ① 대학교의 인사위원회는 교무처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임명하는 7인의 교원으로 조직한다(2013. 4. 30. 개정).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50조(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직무)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한다.

-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1조(인사위원회의 회의소집 등)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2조(회의록 작성) ①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4인 이상이 서명·날인한다.

제53조(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① 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대학교 소속 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제54조(운영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 2 절 교원징계위원회

제55조(교원징계위원회 설치) 교원의 징계사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를 둔다(2016. 12. 05. 개정).

제56조(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및 구성) ①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는 위원 9인(위원장 1인 포함한다)으로 조직한다(2016. 12. 05. 개정).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2016. 12. 05. 개정).

1. 교원 또는 법인의 이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나.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 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 라.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교원징계위원회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2016. 12. 05. 개정).

1. 제2항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외부위원"이라 한다)을 최소 2명 이상 포함한다(2022. 11. 16. 개정).
2. 법인 또는 용인대학교에 소속된 사람은 외부위원이 될 수 없다.
3. 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2016. 12. 05. 신설).
4. 특정 성(性)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2022. 11. 16. 신설)

제56조2 [외부위원의 임기 등] ①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2016. 12. 05. 신설).

② 법인 이사장은 외부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2016. 12. 05. 개정).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62조의4에 따른 비밀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2016. 12. 05. 신설)

제57조[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8조[징계의결의 기한]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 등 성(性) 관련 비위만을 징계 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2022. 12. 28. 개정).

제59조(제척사유)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 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59조의2(위원의 기피 등) ①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 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직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59조의3(교원의 징계의결 요구 등) 교원의 임용권자가 법 제64조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법 제66조의2 제3항에 따라 징계의결 재심의를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서 또는 징계의결 재심의 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2016. 12. 05., 2022. 12. 28. 개정).

1. 징계혐의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서류
2. 징계의 종류와 양을 기재한 서류
3. 징계사유서와 징계요구자의 의견서
4. 징계혐의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서류
5. 징계혐의자 이력서
6. 근무성적표
7. 징계 사유가 「교육공무원법」 제52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 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등 관련 전문가가 작성한 별지 서식의 전문가 의견서. 다만, 본문에 따른 징계 사유와 관련하여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공소장, 혐의자·관련자·관련증인에 대한 신문조서 및 진술서 등 수사기록이 통보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60조(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1조(징계의결) ① 징계의결은 재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 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용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2016. 12. 05. 개정).

③ 임용권자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2016. 12. 05. 개정).

④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임용권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

등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4항에 따라 징계처분의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2022. 12. 28. 개정).

⑥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2022. 12. 28. 개정).

제61조의 2[징계의결의 재심의 요구] ① 교원의 임용권자는 시립학교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징계를 요구받은 사항에 대하여 제61조 제2항에 따른 징계의결서를 받은 때에는 같은 조 제3항, 제4항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그 내용을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2016. 12. 05. 신설).

② 임용권자가 관할청으로부터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자체 없이 해당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하며, 해당 교원징계위원회가 재심의한 결과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주문과 이유를 적은 징계의결서를 작성하여 관할청과 임용권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2016. 12. 05. 신설, 2022. 12. 28. 개정).

③ 임용권자가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서를 받았을 때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해당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2022. 12. 28. 신설).

제62조[징계의결시의 정상참작 등]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62조의2[징계사유의 시효] ①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징계사유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 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제1호 각 목 및 「교육공무원법」 제52조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2016. 12. 05., 2022. 12. 28. 개정).

② 제62조의3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제62조의 3 제1항에 따른 조사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2016. 12. 05. 개정).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 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2016. 12. 05. 개정).

제62조의3[감사원 조사와의 관계 등] ① 교원의 임용권자는 감사원, 검찰, 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으로부터 교원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 10일 이내에 통보 받은 사실을 교원 징계에 반영하여야 한다(2016. 12. 05. 신설).

②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2016. 12. 05. 신설).

③ 검찰, 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수사개시 통보

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2016. 12. 05. 신설).

제62조의4[비밀누설의 금지] 교원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2016. 12. 05. 신설).

제63조[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당해기관 소속 직원 중에서 그 임명권자가 임명한다.

제64조[운영세칙] 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3 절 사무직원

제65조[자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기능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일반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2014. 02. 28. 일부삭제).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 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을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기능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 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2014. 02. 28. 개정).

③ 재직중인 일반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게 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66조[임용] ① 일반직원의 신규임용, 승진, 승급, 전직, 전보, 강임, 휴직, 직위해제,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 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③ 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대학교 소속 일반직원은 총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제67조[복무]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68조[보수 등] 일반직원의 보수 및 퇴직관련 급여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직급 및 근속기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2013. 02. 08. 개정).

제69조(신분보장) 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70조(징계 및 재심청구) 일반직원의 징계 및 재심청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일반직원의 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는 따로 두어야 한다.

제 7 장 직제

제 1 절 법인

제71조(법인 사무조직) ①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인 사무국을 두며, 국장은 교수로 겸보하거나 부참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단, 업무상 필요한 경우 국장을 별정직으로 보할 수 있다(2012. 7. 20., 2022. 12. 28. 개정, 2024. 10. 01. 개정).

② 법인사무국에는 총무과를 두며, 과장은 참사로 겸보한다.

③ (2022. 12. 28. 삭제)

제 2 절 대학교

제72조(총장 등) ① 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총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② 총장은 교무를 통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표한다.

③ 대학교에 1인의 부총장과 1인의 특임부총장을 둘 수 있고, 교수, 부교수 또는 특임교수로 겸보한다(2017. 7. 14., 2024. 02. 02., 2025. 02. 05. 개정).

④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부총장이 궐석시 직무대행자의 순위는 따로 정한다.

제73조〔하부조직〕 ① 대학교에 기획처·교무처·교육혁신처·학생처·사무처·국제교류교육원·입학관리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둔다(2005. 03. 01., 2011. 03. 31., 2015. 02. 26., 2018. 09. 03., 2021. 02. 08., 2022. 08. 18., 2024. 02. 02. 개정).

② 기획처장·교무처장·교육혁신처장·학생처장·사무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부참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고, 국제교류교육원의 장은 원장으로 칭하며, 입학관리실의 장은 실장으로 칭하고, 원장 및 실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부참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2005. 03. 01., 2007. 02. 16., 2011. 03. 31., 2015. 02. 26., 2018. 09. 03., 2020. 02. 28., 2021. 02. 08., 2022. 08. 18., 2024. 02. 02. 개정).

③ 기획처에 기획예산과, 대외협력실, 평가성과분석센터, 혁신사업추진단을 두고, 대외협력실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이나 부참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고, 대외협력실에 대외협력과를 두고, 각 과장, 센터장 및 단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부참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고, 기획처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기획부처장을 둘 수 있고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부참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2006. 06. 14., 2007. 02. 16., 2011. 03. 3., 2011. 05. 01., 2012. 03. 01., 2012. 07. 20., 2020. 02. 28., 2024. 02. 02. 개정).

- ④ 교무처에 교무지원과, 학사관리과, 교직과를 두고, 각 과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부참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고, 교무처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교무부처장을 둘 수 있고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부참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2007. 02. 16, 2011. 03. 31, 2012. 02. 27, 01, 2012. 07. 20, 2020. 02. 28., 2022. 08. 18., 2024. 02. 02. 개정).
- ⑤ 교육혁신처에 교수학습지원센터, 원격교육지원센터, 취창업지원센터, 학생생활상담센터를 두고, 각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혹은 부참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고, 교육혁신처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교육혁신부처장을 둘 수 있고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부참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2024. 02. 02. 신설).
- ⑥ 학생처에 학생지원과, 장학과, 장애학생지원센터를 두고, 각 과장과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부참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고, 학생처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학생부처장을 둘 수 있고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부참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2005. 03. 01, 2006. 06. 14, 2007. 02. 16, 2012. 07. 20, 2013. 12. 09, 2019. 12. 30., 2020. 02. 06. 2020. 02. 28., 2024. 02. 02. 개정).
- ⑦ 사무처에 총무지원과·회계과·안전관리과·비상계획과를 두고, 각 과장은 부참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고, 사무처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사무부처장을 둘 수 있고, 부참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2007. 02. 16, 2020. 02. 28., 2022. 08. 18., 2024. 02. 02. 개정).
- ⑧ (2006. 06. 14, 2007. 02. 16, 2012. 07. 20, 2015. 02. 26. 2020. 02. 28. 2021. 02. 08. 개정, 2024. 02. 02. 삭제).
- ⑨ 국제교류교육원에 국제교류교육과를 두고 과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혹은 부참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2006. 06. 14. 신설, 2011. 03. 31, 2012. 07. 20, 2018. 09. 03. 2020. 02. 28., 2024. 02. 02. 개정).
- ⑩ 입학관리실에 입학관리과를 두고 과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혹은 부참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2022. 08. 18. 신설, 2024. 02. 02. 개정).
- ⑪ 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2022. 08. 18. 신설, 2024. 02. 02. 개정)
- ⑫ 제1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2011. 03. 31. 신설, 2011. 05. 01., 2024. 02. 02. 개정).
- 제73조의 2 [학장, 대학원장]** ① 대학교의 각 단과대학에 학장을, 대학원에 대학원장을 두고, 학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학장을 둘 수 있고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2024. 02. 02. 개정).
- ② 학장과 대학원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 ③ 학장과 대학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당해 단과대학 또는 대학원의 교무를 통괄하며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④ 대학교의 단과대학 및 대학원에 교학부(과)를 두고, 교학부장 및 교학과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부참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2007. 02. 16., 2012. 07. 20., 2015. 02. 26., 2020. 02. 28., 2024. 02. 02. 개정).
- ⑤ 대학원의 세부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74조(부속시설) ① 대학교에는 필요한 부속시설을 두고, 사회복지시설을 수탁받아 운영할 수 있다
(2020. 02. 28. 개정).

② 부속시설에는 각각 장을 두며, 부속시설의 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부참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③ 부속시설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부속시설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일반직 또는 교원으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75조(도서관) ① 도서관에 학술정보지원과와 학술정보열람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참사 이상으로 보한다(2007. 02. 06., 2015. 02. 26., 2020. 0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3 절 정원

제76조(정원) 법인 및 대학교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제 4 절 보칙

제77조(광고) 이 법인의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일간신문 또는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매체를 통하여 공고한다(2024. 10. 01. 개정).

제78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79조(설립당초의 임원)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임 기	주 소
이사장	김형태	1913. 1. 26	5년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147-3
이 사	이제황	1910. 1. 4	5년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 29-55
"	이순재	1904. 9. 27	5년	서울시 서대문구 향촌동 210-2
"	김상철	1915. 10. 22	2년6월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 27가 150
"	장영완	1914. 2. 6	2년6월	서울시 종로구 옥인동 19-5
감 사	홍태준	1911. 1. 24	5월	서울시 종로구 금호동 산10
"	이성호	1910. 9. 15	2년6월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148-18

제 8 장 청렴의무 등

제80조(청렴의무) 이사장, 학교법인의 임직원 및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일

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1조[사학기관 행동강령] ① 이사장, 학교법인의 임직원 및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제80조에 따른 청렴의무를 위하여 사학기관 행동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이사장은 징계 등의 제재 조치를 한다.

② 제80조에 따른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사학기관 행동강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 가. 학교법인 또는 학교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
 - 나. 학교법인의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이권개입·알선·청탁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신고 대상의 범위는 사립학교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사학기관 행동강령 위반에 따른 징계 등의 제재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학기관 종사자가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부칙

① [시행일] 1956년 4월 25일부로 재단법인 대명학원으로 인가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64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재단법인 대명학원을 학교법인 대명학원으로 그 조직을 변경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75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7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직원으로 임용된 자중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정관 시행 이후 6월 이내에 당연 퇴직된다.

③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어 사무조직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이 이 정관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사무직원의 신규 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④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 2〉의 각 직급에 임용된 자는 이 정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편 학교법인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81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②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학교의 교원의 임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③ [교원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교원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류중인 징계 및 재심청구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④ [학교보직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사립학교법 및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학교의 보직은 이 정관에 의하여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 ⑤ [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학교 인사위원회 위원 중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 ⑥ [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용되어 근무하는 일반직원이 이 정관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반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83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83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85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86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86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재임중인 이사는 그 임기 만료시까지 이 정관에 의하여 취임된 것으로 본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88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88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89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대한유도학교 소속 교원(학교의 장은 제외한다)과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대한체육과학대학의 소속 교원과 직원으로 본다. 다만, 교원의 임용기간은 종전 임용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폐지되는 학교의 학생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폐지되는 대한유도학교는 1996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동학교 및 이 정관 시행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0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 [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대한체육과학대학 교원(학장은 제외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다만, 교원의 임용기간은 종전 임용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용된 인사위원회 위원 중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④ [대학 보직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사립학교법 및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대학의 보직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정관은 시행당시 대한체육과학대학 학장은 이 정관에 의해 학교법인이 임명한 것으로 보며, 임용기간은 종전 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에 명시된 용인대학교는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대한체육과학대학교 소속 교직원(총장포함)은 이 정관에 의하여 용인대학교의 소속 교직원으로 본다. 단, 교원 및 총장의 임용기간은 종전 임용기간의 잔여기간으로 본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4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5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6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6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재직 중인 교원으로서 그 임용 잔여기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각각 그 잔여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적용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8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1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2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 [계약제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2001년 12월 31일까지 재직하고 2002년 1월 1일 현재 재직중인 교원에 대하여는 이 정관 제39조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 [재직중인 대학교원에 대한 임용지침]을 적용한다. 단, 다음과 같이 기간을 정하고 임면한다.

1. 교수수 : 정년까지
2. 부교수 : 7년
3. 조교수 : 3년
4. 전임강사 : 2년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5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5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5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② [감사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개정 정관 시행 당시 재임중인 감사에 대해서는 2009년 01월 29일 취임 승인을 받은 감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 [전임강사의 명칭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1. 제39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임강사는 이 규정에 따른 조교수로 본다.

2. 제39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임강사 근무경력은 이 규정에 따른 조교수 근무경력으로 본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12월 0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0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09월 0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2020. 06. 30. 수정)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제31조의3 제1항의 개정정관은 202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23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24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24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25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법인 일반직원 정원

구 분	직 급 별	인 원
	총 계	29명
일반직	소 계	24명
	2급(참 여)	1명
	3급(부참여)	2명
	4급(참 사)	1명
	5급(부참사)	1명
	6급(주 사)	2명
	7급(부주시)	3명
	8급(서 기)	7명
	9급(부서기)	7명
기능직	소 계	3명
	3등급(운전기사)	7등급(운전기사) 1명
	6등급(고 용 원)	2명
별정직	소 계	2명
	2급(참 여)	1명
	3급(부참여)	1명

〈별표 2〉 대학 일반직원 정원(2006. 06. 14., 2007. 07. 25., 2014. 02. 28., 2016. 02. 29.개정)

구 분	직 급 별	인 원
	총 계	151명
일반직	소 계	113명
	2급(참 여)	4명
	3급(부참여)	7명
	4급(참 사)	16명
	5급(부참사)	18명
	6급(주 사)	24명
	7급(부주사)	27명
	8급(서 기)	13명
	9급(부서기)	4명
기능직	소 계	31명
	6등급	8명
	7등급	8명
	8등급	10명
	9등급	5명
별정직	소 계	7명
	2급(참 여)	2명
	3급(부참여)	2명
	4급(참 사)	2명
	5급(부참사)	1명